

관세청
KOREA CUSTOMS
SERVICE

여행자 휴대품 신고서

- 신고대상물품이 있는 입국자는 신고서를 작성·제출해야 합니다.
- 동일한 세대의 가족은 1명이 대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.
- 성명과 생년월일은 여권과 동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.

성명			
생년월일	년	월	일
여권번호	외국인에 한함		
여행기간	일	출발국가	
동반가족	본인 외	명	선박명
전화번호			
국내 주소			

세관 신고사항 해당 사항에 “☒” 표시

- 1 휴대품 면세범위(뒷면 참조)를 초과하는 “품목”

면세 초과 있음				없음
술	담배	향수	일반물품	

 - 물품 상세 내역은 뒷면에 기재
 - ⇒ 자진신고 시 관세의 30%(20만원 한도) 감면
- 2 원산지가 FTA 협정국가인 물품으로서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물품

있음 ☐ 없음 ☐
- 3 미화로 환산해서 총합계가 “1만 달러”를 초과하는 화폐 등(현금, 수표, 유가증권 등 모두 합산)

있음 ☐ 없음 ☐

[총 금액 :]
- 4 우리나라로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

있음 ☐ 없음 ☐

 - ㄱ. 총포류, 실탄, 도검류, 마약류, 방사능물질 등
 - ㄴ. 위조지폐, 가짜 상품 등
 - ㄷ. 음란물, 북한 찬양 물품, 도청 장비 등
 - ㄹ. 멸종위기 동식물(앵무새, 도마뱀, 원숭이, 난초 등) 또는 관련 제품(응답, 사향, 악어가죽 등)
- 5 동·식물 등 검역을 받아야 하는 물품

있음 ☐ 없음 ☐

 - ㄱ. 동물(물고기 등 수생 동물 포함)
 - ㄴ. 축산물 및 축산가공품(육포, 햄, 소시지, 치즈 등)
 - ㄷ. 식물, 과일류, 채소류, 견과류, 종자, 흙 등
 - 가축전염병 발생국의 축산농가 방문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- 6 세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

있음 ☐ 없음 ☐

 - ㄱ. 판매용 물품, 회사에서 사용하는 견본품 등
 - ㄴ.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반입한 물품
 - ㄷ. 세관에 보관 후 출국할 때 가지고 갈 물품
 - ㄹ. 한국에서 잠시 사용 후 다시 외국으로 가지고 갈 물품
 - ㅁ. 별송품, 출국할 때 “일시수출(반출)신고”를 한 물품 등

본인은 이 신고서를 사실대로 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: (서명)

< 뒷면에 계속 >

1인당 “품목”별(술/담배/향수/일반물품) 면세범위

▶ 해외 또는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하거나, 기증 또는 선물받은 물품 등으로서

술	2병	합산 2ℓ 이하로서 총 US \$400 이하	미화 800달러 이하
담배	- 결련형: 200개비(10갑) - 시가: 50개비 - 액상: 20mℓ(니코틴 함량 1% 이상은 반입 제한) ▶ 한 종류만 선택 가능	일반 물품	▶ 다만,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에 합격한 것으로서 총 40kg, 총 금액 10만원 이하 (물품별로 수량·중량 제한)
향수	60mℓ		

* 만 19세 미만인 사람(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)에게는 술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습니다.

▶ 농산물 등 면세범위

농림축수산물(쌀 1kg, 소·돼지고기 각 10kg, 그 외 물품당 5kg)
한약재(인삼·상황버섯·차가버섯 각 300g, 녹용 150g, 그 외 물품당 3kg)

면세범위 초과 “품목”의 상세내역

▶ 면세범위 이내 “품목” - 작성 생략

▶ 면세범위 초과 “품목” - 해당 품목의 전체 반입내역 작성

예 시: 술 3병, 담배 10갑, 향수 30mℓ, 시계(가격 1천 달러) 반입 시
→ 술 3병, 시계(가격 1천 달러) 작성(면세범위 이내인 담배, 향수는 작성 생략)

품목	물품명	수량(또는 중량)	금액
술			
담배			
향수			
일반 물품			

▶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(총 중량: kg, 금액:)

농림축수산물		한약재	
고추(가루 포함) ()kg	인삼(홍삼 포함) ()g		
참깨 ()kg	상황버섯 ()g		
참기름 ()kg	녹용 ()g		
기타 ()kg	기타 ()kg		

※ 세관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한 경우 가산세(납부세액의 40% 또는 60%)가 추가 부과되거나,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(해당 물품은 물수)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.

95mm×245mm[백상지 100g/㎡]